

「도심융합특구법」·「도심항공교통법」·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6일(금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도심융합특구법」)·「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도심항공교통법」)·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.

「도심융합특구법」

-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‘도심융합특구*’의 제도적 기틀 마련 -

* 국정과제 38번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(산업)와 삶(주거), 여가(상업·문화)가 집약되는 사업으로 ‘판교 테크노밸리’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

- 「도심융합특구법」은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국토부 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.
 - 시·도지사등(시행자)이 기본계획(실시계획)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. 이와 함께,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·건축규제 완화, 부담금 감면,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혜가 적용된다.
- 국토교통부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(대구·광주·대전·부산·울산)에 지역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,
-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 또한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.

「도심항공교통법」

- ‘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*’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-

*국정과제 28번,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

- 「도심항공교통법」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, 「항공안전법」, 「항공보안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공항시설법」(항공 4법) 등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, 신기술·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크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혁신적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적인 우수기업의 기술개발과 선도국 정부들의 안전성 검증 및 제도 마련이 한창으로 국가적 차원의 속도전·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.
- 한편,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(딜로이트社 4위 평가('22), KPMG社 5위 평가('23))되는데, 세부적으로 기술·산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나 제도적 준비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.
-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 여건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,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·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.
- 규제특례는 실증사업·시범운용 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데,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기존 항공 4법이 전면 배제된다.
- 한편,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, R&D 지원, 인력양성·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, 국내외 핵심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(K-UAM그랜드챌린지)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”면서,
- 특히, “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

- '24년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 -

* 국정과제 39번,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(가덕도신공항 건설)

-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은 가덕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,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,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으며, 공단의 운영·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한다.
 - 이와 함께, 공단 설립 시까지 설립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단설립 위원회(위원장 : 국토교통부 차관)를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설치한다.
- 국토교통부는 '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신공항건설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공단의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,
 -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위원회 설치, 인력 충원,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도심융합특구법>	국토정책국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수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하 (044-201-4731)
			주무관	안유나 (044-201-3649)
담당 부서 <도심항공교통법>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	서기관	서정석 (044-201-4735)
			주무관	신한나 (044-201-4280)
담당 부서 <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>	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	책임자	팀 장	위은환 (044-201-5202) 홍복의 (044-201-5207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대현(5203), 백선영(5208) 이조순(5209), 노태훈(5204) 유욱재(5211)

참고1

「도심융합특구법」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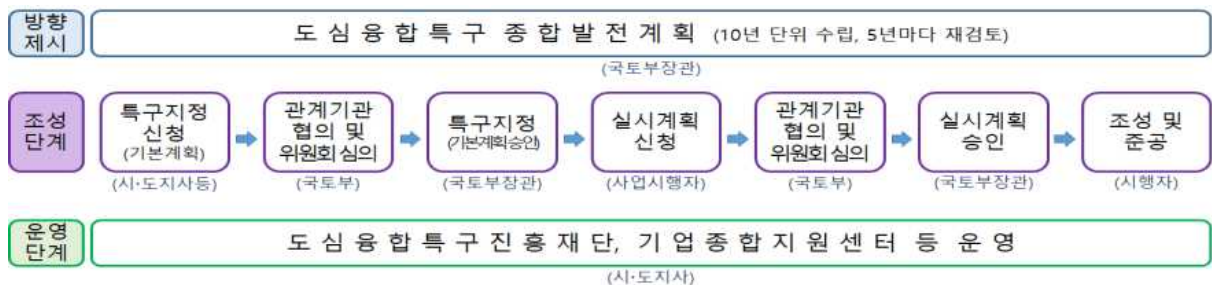
- (정의) “특구”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지방 도심에 ②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민·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

- ▶ 도심융합특구: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행정·재정지원하는 전체 구역 범위
- ▶ 특구개발사업: 특구 내에서 본 법의 절차에 따라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
- ▶ 특구연계사업: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구 내에서 타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

- (지정대상) 비수도권으로서 아래 요건을 고려

- ①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
- ②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
- ③ 대학·연구소·기업·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
- ④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

- (추진절차)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(국토부장관) → 실시계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부장관) → 조성



*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·실시계획을 동시 승인하여 절차 간소화 가능

- (지원사항) ①도시·건축규제 완화, ②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·집중 지원, ③정주여건 개선 등

- (운영·관리)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

*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(총괄), 기업종합지원센터,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설립 근거

- (시행일)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참고2

「도심항공교통법」 주요 내용

- ☐ (목적) 도심항공교통의 도입·확산과 안전·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(제1조)
- ☐ (정의) 도심항공교통, 도심형항공기, 버티포트, 회랑, 실증·시범사업 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·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(제2조)
 - * ①운송사업, ②교통관리사업, ③버티포트운영·관리사업, ④수색·구조·의료·비행훈련 등 사용사업
- ☐ (실증사업·시범운용) 연구개발·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국토부장관지정(제6조) 및 실증사업자 지정·지원(제7조)
 -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국토부장관지정(제8조) 및 정기·수시 평가(제20조)
- ⇒ (규제특례) 실증·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*을 제외하고는 항공 4법(항공안전·보안·사업법, 공항시설법) 적용 배제(제15조, 제16조)
 - * 등록, 형식증명·감항증명, 항공안전 보고 등 →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
- ☐ (버티포트) 국토부장관 직접 개발 가능, 이외의 자 시행 시 개발사업 국토부장관허가 및 시행계획 국토부장관인가(제9조, 제10조), 연관 법률 인허가 의제(제11조) 및 국토부장관지정(제12조)
- ☐ (회랑)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국토부장관지정 근거 규정(제13조)
- ☐ (도심항공교통사업자)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국토부장관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4조)
- ☐ (시스템 구축)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, 공간정보 구축 근거 마련(제17조, 제18조)
- ☐ (보험가입)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부여(제21조)
- ☐ (계획·지원시책) 5개년 기본계획(제4조), 행정적·재정적 지원·전문인력 양성·국제협력 국토부장관, 시·도지사지원 근거 마련(제22조~제25조)
- ☐ (보칙) 처분 시 청문(제26조), 업무 시 보고·출입검사(제27조), 권한 위임·위탁(제28조), 벌칙(제30조), 과태료(제31조) 등
- ☐ (부칙) 공포 6개월 후 시행,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

- ① (인프라 구축^{'21~'23.8}) 개활지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·격납고 건축, 시험장비 설계·구축 및 인프라 운용시험*

* UAM 모사항공기(Surrogated Aircraft, 예: 헬리콥터)를 이용한 인프라 운용확인 시험

- ② (1단계 실증^{현재, '23.8~'24.12}) 비행시험장(개활지, 고흥)에서 사전시험*을 통한 UAM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, 통합운용 실증 수행

* 특정 UAM 항공기(또는 UAS 기체)를 이용한 실증 프로그램 운용 사전확인 시험

- ③ (2단계 실증^{'24.8~'25.6}) 준도심 · 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수행

【 종합실증(그랜드 챌린지) 단계적 계획 】



- ④ (상용화착수 지원^{'25}) K-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데이터 분석, 관련기술 및 인프라 민간제공을 통한 상용화 착수 지원

- ⑤ (R&D 연계^{'22~'25}) 실증시험 중 항공기 위치확인 등 안전성 검토 및 초기 상용화 인프라 지원을 위한 R&D과제*와 연계하여 진행

* 초기 UAM 교통관리 서비스 및 항로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획득·활용체계, UAM 객체별 운용능력 및 절차 확보를 위한 가상 통합운용 등 2개 신규과제('22~)

참고3

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 주요 내용

- ☐ (목적) 이 법은 가덕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신공항건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,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제1조)
- ☐ (정관) 공단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(제6조)
 - * 목적, 명칭, 주사무소·지사·준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, 업무 및 집행, 재산 및 회계, 임원 및 직원, 이사회,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
- ☐ (사업) 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,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- ☐ (임원)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(제8조)
- ☐ (자금의 조달 등)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,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(제16조)
- ☐ (소유권 등)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,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(제19조)
- ☐ (사업계획 등의 승인)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(제21조)
- ☐ (토지의 매입 등)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, 토지 등의 수용·사용에 관하여는 「토지보상법」을 적용하도록 함(제26조)
- ☐ (공단의 설립준비)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(7인 이내)를 설치(부칙)